

技術士의 位相과 技術士法

The Phase and Laws of Professional Engineers

朴　　靈　　珍*
Park, Kyung Jin

1. 서　　언

현행 國家技術資格法은 기술자격을 정하여 技術士를 우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技術士資格所持者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이도 탄생하면 이름을 갖게되고, 건물도 완공되면 빌딩 이름이 불려지며, 각 분야의 최고 자격에는 반드시 고유의 자격법이 있는데, 平等과 公平의 원리에 의하여 기술사법도 꼭 있어야 할 법인 것은 三尺童子도 認定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1976年 12月 31日 公布法律第2994號로 폐지된 技術士法은 시대가 바뀌고 다시 制定할 수 있는 여전이 구비된지 오래 되었는데, 15년이 지난 오늘에야 겨우 그 可能性이 現實化되었다.

1991年 5月 20日은 초여름인데도 과천의 날씨는 무더웠다.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인한 전면 개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술사법(안)은 아직도 局長決裁를 통과하지 못해 技術士會會長 이하 법을 推進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안절부절한 시간들이었다. 5월 들어 수차례나 과기처를 왕래하였지만 오늘은 꼭 目的 달성을 하여야 한다는 一念에 사무국장과 같이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0시간을 과기처에서 보낼때는 무척이나 피로하였고 와이셔츠는 땀에 흠뻑 젖은 하루였으며 영업을 끝내고 문닫는 음식점에서 사정하여 겨우 저녁을 먹었다.

함께 立法豫告하기로 약속했던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은 몇일전 먼저 立法豫告했고 개각은 임박하여 2주안에 꼭 장관결제가 끝나야 失明하지 않는다는 일념에서였다.

여러사람들의 노력끝에 5月 29日 드디어 우리 6,066명의 오랜 숙원이던 기술사법(안)의 입법예고가 공포되어 한단계는 成就시켰다. 응당 별써 制定되었어야 할 당연한 법인데도, 찾은 과기처장 관 경질과 일부 實力者의 편견으로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시작은 지금부터가 重要한 것이다. 오직 한국에만 唯一하게 존재한다는 기술용역육성법이 현존해 있고, 그 후속법으로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제약과 相互간 문제점의 해결이 전제되었고, 그러므로 技術士法 추진과정에서 우리들의 要求事項이 많이 삭제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령에 삽입하여야 하는가에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를 요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技術士會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2. 한국技術士들의 현주소

1) 수평연대의식의 必要性

“왜?, 건축사나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보다 100~200%의 숫자가 많은 기술사들은 아직 기술사법도 갖지 못하고 권익보장을 받지 못하는 原因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런 나의 질문에 어느교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그것은 기술사 개개인은 우수하나 짧은 眼目

* 通信技術士(電氣通信) (社)韓國技術士會 技術士法 推進委員

으로 눈앞의 일에만 热中하며 수평적인 연대의식이 부족하여 뭉치지 못하므로서 技術士의 수에 비해 큰 힘을 발휘 못한다”고 하였다.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 하여 주겠지, 또는 내가 총회 등에 참석 안해도 다른 사람들이 참석해 주겠지 하는 生覺으로 불참하여 총회 때 참석자는 5%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무리 個人的인 事情이 있었다고 변명한다 해도 지금은 소신 없는 과기처의 정책으로 技術士의 位相이 혼들리는 어려운 때이다. 신문에는 용역업 개방, 기술사 확보의 무폐지 등등 보도되고 있으니 궁금하여서라도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6,520 여명의 技術士를 배출한 韓國技術士會가 자체 회관이 없어 3,500여명의 회원을 갖인 建築士들의 회관을 빌려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강당의 의자에 가뭄에 콩나듯 드문드문 앉아 있는 모양은 수평연대의식의 水準을 말해 줄 뿐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는 분회장 까지도 불참하는 실정이다.

2) 個人을 떠나 技術士임을 상기하자.

어떤 기술사는 자기를 위해서는 권익보호운동을 할 必要가 없다고 놓담반, 진담반 말한다. 公務員이든 教授이든, 會社員이든,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어떤 직장이고 간에 자격증을 소지한 이상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여야 한다.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技術士이기에 實力を 인정받고 승진이나 높은 보수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며, 정년퇴직 후에는 제2의 職業을 갖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 어떤 기술사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會議나 공청회 등에서自身的 이익을 위해 本人이 기술사임을 전제하면서 기술사에 對한 역선전과 더나아가 기술사 무용론을 주장하며 극소수 偏見者들에게 찬사와 후원을 받아 각종 회의나 공청회 등에 당골 연사로 登場하기도 한다. 치욕적인 역사인 원나라 지배를 받은 고려 때와 일제시대에 民族의 이익을 저버리고自身的 영화와 안일을 추구한 친일파와 친일파에 비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족보를 더듬어 보면 친일파와 친일파의

後孫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 필자 역시 회의 등에 나가 發言하면서도 강한 의심은, 왜?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당연한 순서는 기술사가 기술사를 악선전 하기 전에 취득한 資格證부터 반납하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偏見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3) 二重就業을 근절하자.

작년 8月경 二重就業으로 적발된 20여명의 技術士가 있었다. 自身도 모르게 2중취업이 되어 있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業主의 농간에 의한 피해자가 대부분이었다는 후문이다.

이 숫자는 전체 技術士의 0.3%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약점을 확대하기 좋아한 사람들은 技術士 역선전 자료로 사용할지도 모르니 二重就業을 근절해야 한다.

앞으로 전산망의 活用으로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당국의 철저한 監督과 기술사 각자의 고의적인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잔혹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극소수의 기술사들은 行動을 조심하고 技術力を 증진시키며 성실한 자세로 業務에 충실해야 한다. 품위유지와 능력향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3. 國家技術資格法에서는 技術士 진출 저조하다.

1) 다른 자격자와의 비교

1990年 가을까지는 모든 신문에 기술사가 부족하여 용역업 기술인력 조건을 완화하여 고급기술자로 대체한다고 떠들어댔다. 사실은 技術士가 부족한 게 아니고 技術士法이 없으므로 신분이 불안하여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水準이 비슷한 자격 관련 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建築士: 약 3,500명

公認會計士: 약 2,900명

辨理士: 약 200명으로

技術士 6,066 명보다 훨씬 적으며 辦理士의 경우는 모든 합격자가 100% 辦理士業에 進出했고 다른 資格者도 평균 90% 이상 해당업에 종사한 반면 技術士는 현재 겨우 20% 정도만 資格을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고 있다.

가장 고급기술사로 모두 대체하여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通信技術士도 겨우 30% 進出에 그치고 있다.

이런 통계를 과학기술처에 제시하고 강력히 항의한 후로는 기술사가 부족하다는 등의 신문기사는 없어졌다.

2) 90 年度의 技術士의 합격률

과학기술처와 노동부가 합세하여 대폭적인 합격률 시도한 작년부터는 一年中 2 회의 試験을 실시하고 합격율은 직종에 따라 응시자의 10~30%를 합격시키는 이변을 보였다. 필자도 회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힘이 커지기에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지나친 합격의 선심은 質的인 저하를 초래하게 됨을 우려한다.

90 年도 辦理士試験 합격율을 보면 2,800여명 응시에 합격자는 19명으로 합격비율은 약 0.7% 이었다.

또 기술사수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적은 숫자라고 主張한다면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회계사 등도 모두 적은 수이다. 더구나 先進國은 技術을 重要視한 역사적 배경으로, 유교적인 사상으로 기술을 賤視한 한국보다는 훨씬 전체국민대 기술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농업인구가 많은 것은 상대적이며, 한국에 農業人口가 많다고 선진국에서 必要없는 농업인구를 꼭 중원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에 미술가가 많다고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도 미술가수를 늘리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반대하겠지만, 아마 과학기술처 관할 업무라면 능히 시도할 것이다.

3) 技術士를 業務에 활용하는 방안

(1) 建築物의 설계와 감리가 반드시 공인 자격자인 建築士가 하게하고, 공인회계사만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技術用役業務는 반드시 기술사가 서명하게 하여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統一된 法 아래서 資格과 業務가 일체화되도록 技術士法의 빠른 제정과 기술사 각자는 연구개발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3) 과학기술대학의 新設이나 공대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술인의 활용책은 더욱더 중요하며 공학도의 진로를 열어 주어야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진력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4. 技術士에게 技術決定權을 주자.

이 내용은 어느 교수님의 理論을 인용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產業社會가 성숙된 오늘날 技術決定權을 행사할 수 있는 基本的 體制構成은 커녕 취득조차 못한채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 技術決定權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을 결정하거나 설계할 때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主體를 말한다.

기술결정권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의사의 진료권, 辯護士의 辯論權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계업자의 중계권까지 면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免許權은 배타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법률이 制定되면서 無免許醫師와 藥師의 진료나 조제가 불가능함은 물론 위반했을 때 체형까지도 감수해야 할만큼 권한이 강화되었다. 설사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이와같은 水準까지는 못가더라도 技術立國이나 기술우위의 社會를構成하려면 技術決定權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행사하는 전문기술사의 의무와 권한을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必要하다.

오늘날 技術의 重要性은 國民의 재산과 生命을

시키는 일이기에 先進國과 같이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最下位에 밀린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技術用役業을 育成하려면 기술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관계당국과 경영자의 인식부족으로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技術士法에는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결정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시스템을 설치할 때 개념설계와 기본설계의 타당성 여부의 최종판정은 技術士가 하도록 技術士法과 用役法에 확고히 규정하면 좋다.

따라서 技術決定權을 행사할 기술사는 용역회사에 근무하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갖든 시스템의 적정성을 판정해 주고 설계와 감리 등에 책임을 지게 하여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技術決定權은 辯論權이나 진료권과 같이 자유권한에 속하고 지적소유권에 비교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처는 이점을 유념해서 法制定과 개정에 임해야 한다.

5. 技術士會의 活性化 방안

1) 친목단체인가 권익단체인가?

젊은 기술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기술사회가 단순한 친목단체인가, 권익보호단체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말은 기술사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면 참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1년 예산 고작 2억원 정도로 회원들의 회비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우리 6,520 명의 技術士들은 현시점에서 분명히 용기와 단안이 필요하다. 社會生活에서도 경제력이 있어야 유지급이 되고 國家도 경제력이 있어야 강대국이 된다.

기술사들의 一年會費 30,000 원은 우리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에 너무나 적다. 더욱이 약 30%의 기술사들은 가입하지도 않고 또 가입회원중에서도 會費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한다.

건축사의 경우 年會費는 약 20만원(月 16,000원)이고 가입비는 300만원이며, 수주량에 비례

한 실적회비가 있다하여 변리사의 경우도 年會費가 12만원이라고 한다. 우리 기술사는 來年부터라도 年 6만원(月 5,000원)으로 올리고 자격등록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합격자는 필수적으로 技術士會에 가입하도록 하는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찬조금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술사회 任員들은 年間 최소한 10만원 이상의 찬조금을 내도록 내규로 정한다. 그리고 任員을 단순한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 기술사들의 입지는 태풍앞의 촛불처럼 연약하고 포악무도한 적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거운 使命感으로 本業보다 먼저 韓國技術士會 임원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技術士의 位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술사법을 完成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수년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다시 制定되어야하는 기술사법(안) 입법예고는 하면된다 는 意志의 결집이기도 하다.

2) 상임부회장의 상주근무의 필요성

과학기술처에서나 타부서등에서 기술사에 대한 業務를 委任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과 더불어 상임부회장 제도를 두어 권익차원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사회에도 상근부회장이 있다는데 대정부업무에서 상임이 사보다는 상근부회장의 명함이 더 유리할 것이다.

現在와 같이 事務局長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며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건축사가 어떻게 國家技術資格法에 편입되지 않고 獨立法으로 유지되어 왔는가를 연구하고 운영상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

3) 기술인의 권익을 지켜주는 교두보역할

한국기술사회는 수많은 공학도와 기술자격자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기술사가 되므로서 사회적 경제적 우대를 받고 신분이 보장되므로서, 安心하고 技術發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

침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이사들과 원로기술사들도 인기발언만으로 그치지 말고, 관계부서와 접촉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며, 한편으로는 기술사들을 독려하여 계속적인 능력개발과 성실한 자세로써 기술사의位相을 정립시키도록 하여 권익보호의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有能한 會長이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없다. 우리모두는協力해야 한다.

6. 관계당국의 소신있는 행정필요

1) 재량권 남용의 실상

과학기술처는 명칭대로라면 과학자와 기술자를 위하고 그들이 主體가 되어 한국의 과학기술을發展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서이다.

과학자의 경우는 다행이 그런대로 대우를 받는 편이며, 더욱이 교육부가 있어 학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 공학사학위 10년 경력자가 공학박사를 대치하는 고급교육자 또는 고급학위자, 제도가 없어 권위에 침해를 받지 않으나,不幸히도 기술자는 보호해 주어야 할 과학기술처가 그들의 재량권을 총동원하여 기술자격자에게 불리한 행정만 모두 골라 자행하고 있어 한심함을 지나쳐 한탄할 노릇이다.

차라리 기술자격자의 活用과 管理는 각 소관부처로 넘기고 오직 과학자만 관계한 과학처로 명칭개정하는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웃 일본은 技術士活用 규정이 각 행정부서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다.

진정 바라건데 과학기술처의 재량권을 기술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활용하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

2) 탁상행정의 虛實

“技術士 대신 고급기술자로 대치하여 기술사가 용역업에서 설땅을 잃어도 기술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다른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전 용역업무 담당행정직공무원의 말이다.

일반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로 음식업이나 시장의 상품판매업도 물론 기술사가 할 수 있겠으나, 자격에 맞는 직업에 종사함이 國家的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 예를 들면, 용역육성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인력 구성조건을 과학기술처장관고시로서 파이재량권을 사용하여, 기술사인 모두를 고급기술자로 대치한 通信用役의 경우 몇몇 회사만 해당되는 비밀공사설계를 제외하면, 어느 회사나 응찰할 수 있는 용역물량은 年 130억원인데, 기술사없이 會社를 운용하게 대폭 완화한 후 작년에 300%의 회사가 급증하여 현재 70여개의 회사가 난립하여 상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회사당 평균매출액 = 총물량(130억) ÷ 회사수(70개사) × 저가입찰(약 65%) ≈ 1억 2천만원으로 경영문제가 심각하다.

신규등록을 받아도 通信은 제외하겠다고 계속 말하여 오더니, 청와대압력 등을 내세워 또 완화 조건으로 신규를 받을려고 한다. 현재 50여명의 기술사중 겨우 30%만 進出하여 기술사의 여유는 충분하다. 부디 탁상행정을 지향하고 용역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7. 結論

모두들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工大가 아닌 法大로 갔더라면 변호사가 되었을 것이고, 商大로 갔더라면 회계사가 되었을 것이고, 같은 공대에서도 건축과로 입학했으면 건축사가 되었을 실력가들이다.

5급공무원이 타자격을 취득하면 홀가분하게 자격과 관련된 전문업으로 진출하는데, 같은 공무원인 기술사합격자는 진출할 엄두도 못한다. 7급공무원이라도 과기처의 소신없는 행정과 技術士法이 없어 신분이 불안하여 진출을 망서린다.

제도적 보장이 없어서 많은 자격소지자가 용역업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기술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전체 기술사중 겨우 20%만이 진출한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1947年부터 試驗을 실시해온 辨理士는 44년간
에 총합격자가 200명도 못되는데도 변리사회는
정부로부터 위임업무가 많다. 기술사는 역사는
27년으로 짧지만 금년 두번의 시험이 끝나면

약 6,700명에 이를 것이다.

부디 技術士會를 강화하여 위임업무 등을 수행
하길 바라고, 기술사 각자들은 좀더 기술사회에
진한 애정을 갖고 회비증액과 납부 등에 앞정서
고 수평연대의식을 강화하여 나가자.

나 아닌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位相
을 우리모두가 지켜나가자.

廣告掲載案內

本會에서 發刊하는 隔月誌「技術士誌」에 廣告掲載를 많이 利用하시여 本會發展
에 積極 協助 있으시기 바랍니다.

□ 技術士誌案內 □

- 發刊部數 : 1回 4,500部
- 發刊時期 : 每年 2, 4, 6, 8, 10, 12月(1年 6回 發刊)
- 配付處 : 技術士全會員, 官公署, 一般企業體, 言論機關 및 各 大學校 其他.

□ 廣告掲載對象 □

一般企業體, 用役業體, 建設機械製造業界, 技術情報 및 企業 PR. 事務所開業.

□ 廣告費

위치 구분	단위	색도	광고계재료	비고
표지 1	-	-	-	칼라는 별도
표지 2	1회	단색	200,000	
표지 3	1회	단색	200,000	
표지 4	1회	단색	400,000	
표지 ½	1회	단색	100,000	

□ 問議處

江南區驛三洞 635-4

科學技術會館 401號

(社)韓國技術士會 事務局 編輯室 TEL : 566-5875. 557-1352

FAX : 557-7408